

[別表의1] <改正 1963·6·8>

住居地域內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 (1) 別表의2와 別表의4에 해당하는 建物
- (2) 常時 使用하는 原動機의 馬力數의 合計가 3馬力을 超過하는 工場
- (3)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容量 10릿터以上 30릿터未滿의 아세찌렌가스 發生器를 使用하는 金屬工業
 2. 馬力數의 合計가 0.25馬力未滿의 原動機를 使用하는 塗料의뿔질
 3. 原動機를 使用하는 2台以下の 研磨機에 依한 金屬의 乾燥研磨(工具만을 使用하는 것을 除外한다)
 4. 콜크, 에브나이트 또는 合成樹脂의 粉碎 또는 乾燥研磨로서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5. 製材, 裁縫機, 織捻糸, 組紐, 編物, 製袋 또는 줄갈날세우기로서 馬力數의 合計가 1馬力以上の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6. 印刷, 製針 또는 石材를 쪼개는 일로서 馬力數의 合計가 2馬力以上の 原動機를 使用하는 것
- (4) 바닥面積의 合計가 50平方米以上の 自動車車庫
- (5) 劇場, 映畫館, 演藝場 또는 觀覽場
- (6) 카바레, 舞蹈場 其地 이와 類似한 用에 共하는 建築物
- (7) 倉庫業을 經營하는 倉庫